기존 내규 (23.7)	개정 내규 (24.1)	비고
제 8 조 (학위취득학점)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6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6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②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5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12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③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2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9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④ 단, 수강신청 이전에 지도교수와 학과(전공)의 허가를 받은 본교 및 타대학 대학원 과목에 한하여 AI 기술 및 AI 융합기술 영역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가능하다.	제 8 조 (학위취득학점)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6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6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②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60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5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12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③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중 인공지능융합 전공 개설 AI 기술 과목 12학점 이상, AI 융합기술 과목 9학점 이상과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AI 융합 실무과목 9학점을 본교 인공지능융합 전공 석사과정 중 취득한 경우 AI 융합 실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. ④ 단, 수강신청 이전에 지도교수와 학과(전공)의 허가를 받은 본교 및 타대학 대학원 과목에 한하여 AI 기술 및 AI 융합기술 영역의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가능하다.	제 8조 ②항 - 석·박사통합과정 AI 융합 실무 과목 이수학점 수정: 18학점 → *9학점* 제 8조 ③항 - AI 융합 실무 과목 학점 이수 전제 조건 추가 AI 융합 실무 과목 9학점→ *0학점(본교 인공지능융합 석사과정 시 취득하였을 경우)*